

[일련번호 : 93]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자문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외부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지급 시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19호 및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소득세는 기타소득 금액의 20%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천징수액은 양천구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입금)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2024년 사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수당(최대 1,255,230원)을 지급하면서 과세최저한(125,000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